
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31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7.

발의자 : 이훈기 · 박정 · 박지원

김주영 · 허종식 · 박찬대

이재관 · 이재강 · 임미애

박용갑 · 정일영 · 최혁진

이병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교육의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명시하고 있음.

「교육기본법」 또한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·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여전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이행 · 점검 체계가 요구되고 있음.

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인원 수가 2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, 이행 현황을 조사 ·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2 신

설).
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학급당 적정 인원 수에 관한 고시 등) ① 위원회는 「유아 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급당 인원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학급당 적정 인원 수가 2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의 이행 현황을 조사·분석 할 수 있고, 그 결과를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12조의2(학급당 적정 인원 수에 관한 고시 등) ① 위원회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급당 인원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학급당 적정 인원 수가 2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의 이행 현황을 조사·분석할 수 있고, 그 결과를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그 밖에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